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2023 시화초 학교생활인권규정(안)



【 목 차 】

<제1장> 총칙	1
제1조(명칭)	1
제2조(목적)	1
제3조(적용근거)	1
제4조(정의)	1
제5조(교육 3주체의 책무)	2
 <제2장> 학생 생활	2
제6조(선도사항)	2
제7조(시설이용과 환경)	2
제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2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2
제10조(위험으로부터 안전)	3
제11조(학습에 관한 권리)	3
제12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3
제13조(휴식을 취할 권리)	3
제14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3
제15조(소지 금지 물품)	4
제16조(소지품 검사의 절차 등)	4
제17조(물건의 수거)	4
제18조(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4
제19조(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5
제20조(학교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5
제21조(양심·종교의 자유)	5
제22조(의사 표현의 자유)	5
제23조(학교 복지에 관한 권리)	6
제24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6
제25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6
제26조(급식에 관한 권리)	6
제27조(건강에 관한 권리)	7
제28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7
제29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7
제30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7
제31조(자치활동의 권리)	8
제32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8
제33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8
제34조(교외생활)	8

<제3장> 생활지도의 범위	8
제35조(생활지도의 범위)	8
<제4장> 생활지도의 방식	9
제36조(조언)	9
제37조(상담)	9
제38조(주의)	10
제39조(훈육)	10
제40조(훈계)	14
제41조(보상)	15
제42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15
제43조(이의제기)	15
제44조(기타사항)	16
<제5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16
제45조(회원)	16
제46조(목적)	16
제47조(권리와 의무)	16
제48조(협의·지원사항)	16
제49조(학급자치회 임원 구성과 선출)	16
제50조(학급자치회 임원의 임기)	16
제51조(학생자치회 임원 구성과 선출)	17
제52조(학생자치회 임원의 임무)	17
제53조(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	17
제54조(학생자치회 회의)	17
<제6장> 학생생활교육	18
제55조(학생생활교육)	18
<제7장> 규정 재·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18
제56조(목적)	18
제57조(적용 범위)	18
제58조(용어의 정의)	18
제59조(위원회 구성)	18
제60조(위원회 운영)	19
제61조(개정안 발의)	19
제62조(검토 및 의견수렴)	19
제63조(심의 및 결정)	19
제64조(공포 및 정보 공시)	19
제65조(연수 및 교육)	19
제66조(기타)	19
부칙(시행)	19

2023 시화초 학교생활인권규정

제 정	2010. 03. 01.
1차개정	2011. 03. 01.
2차개정	2012. 05. 17.
3차개정	2012. 10. 18.
4차개정	2014. 12. 18.
5차개정	2018. 07. 13.
6차개정	2019. 04. 05.
7차개정	2021. 05. 13.
8차개정	2022. 07. 11.
9차개정	2023. 10.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시화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시화초등학교 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 문화 속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균형있는 미래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 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정의)

- ①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교육 3주체의 책무)(신설)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학생 생활

제6조(선도사항) 학생 선도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위반하여 교육목적상 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
- ② 법령을 위반하여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
- ③ 학생의 학습권 보장, 건강권 보호, 안전 확보, 교내·외에서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한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제7조(시설이용과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① 학생은 학교 내외 및 사이버 공간 등에서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

울 권리(을)를 가진다.

-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 ③ 교장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으로부터 안전)

- ① 교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교장 등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학습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장 등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장 등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장 등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장 등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휴식을 취할 권리)

-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장 등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교장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4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29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①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5조(소지 금지 물품)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허용한 물건은 예외로 한다.

1. 흉기 등 사람의 신체·생명 또는 시설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2. 성냥, 라이터, 폭죽 등 인화물질 및 전열기
3. 도박에 관련된 물건
4.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담은 물건
5.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대마 등 향정신성 물질

제16조(소지품 검사의 절차 등)

- ① 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 ② 학생이 소지금지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 목적상 필 요한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③ 소지품 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과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되,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④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학생이 흉기 등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절차·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물건의 수거)

- ① 학생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것이 명 백하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물건을 수 거할 수 있다.
- ② 교사는 물건을 수거한 즉시 학생 및 보호자에게 수거 물건 목록을 통지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내에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그 물건을 반 환하여야 한다.

제18조(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 ①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의 소지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학생은 스스로 자율 적으로 관리한다.
- ② 수업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학생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

생의 휴대전화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방과 후 해당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돌려준다.

- ④ 수업 중 휴대전화를 재차 사용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 ⑤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 ①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20조(학교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 ①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시화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후 14일 내에 개정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관련 정보를 학교구성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양심·종교의 자유)

-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교장 등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장 등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사 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장소에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

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거 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23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은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생태계 보존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25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6조(급식에 대한 권리)

-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다.
-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건강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교장 등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별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교육 방법으로 상별점제를 할 수 없다.

제29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 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교육감 및 교장 등은 제1항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① 교장 등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장 등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교장 등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④ 교장 등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교장 등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자치활동의 권리)

-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학생자치 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장 등은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33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③ 교장 등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교장 등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교외생활)

- ①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제3장 생활지도의 범위(신설)

제35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4장 생활지도의 방식(신설)

제36조(조언)

-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37조(상담)

-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

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8조(주의)

-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39조(훈육)

-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자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 수업 방해 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 교실 내 다른 좌석 1. 교사의 판단으로 자리자리 복귀 2. 실외 교육활동 시 집단으로부터의 분리	1. 교사의 재량에 따라 분리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2. 1호와 2호는 교사의 판단에 따라 순서에 상 관없이 지도 가능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 교실 내 지정된 위치 1. 교사의 판단으로 자리자리 복귀 2. 실외 교육활동 시 집단으로부터의 분리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 1호 또는 2호 지 도에도 불구하고 교육 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또는 2.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교장실, 교무실, 상담실 해당 학년 연구실 등	1. 교사는 해당 학년 연 구실에 연락하여 인솔 교직원을 요청할 수 있 음. 2. 학년 연구실에 인솔 가능한 교직원이 없는 경우 교무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3. 담임교사는 인계시 학 생정보를 인솔교원에게 공유함.	행동성찰문, 교 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학부모에게 연락 후 귀가조치	학교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귀가조치함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반복적인 자각으로 교 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1.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2.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 한 경우	교장실, 교무실, 상담실, 해당 학년 연구실 등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4호-'가'의 반복적인 자각은 한 달 내 10회 이상의 자각에 해당한다. * 3호, 4호와 관련하여 분리된 학생은 해당 시간에 지도 가능한 교원이 담당한다. * 위와 같은 지도에도 개선이 없거나 각 호에 따른 지도를 거부할 시 생활교육위원회 를 개최하여 지도할 수 있다. * 3호, 4호와 관련하여 교사는 조치한 내용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구두보고하고, 내부 결재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최종 보고한다. * 3호, 4호와 관련하여 교사는 조치한 내용에 대하여 일과 중으로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 ⑧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⑪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9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2회차 : 주의를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 보관 · 수업 종료 후 반환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흡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p>* 해당 교사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함.</p> <p>*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관리함.</p>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3일	해당 학년 연구실,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 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p>*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p>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기타		<p>* 물품 분리와 관련하여 해당 교사는 조치한 내용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구두보고하고, 내부결재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최종 보고한다.</p>		

- ⑬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⑭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40조(훈계)

-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41조(보상)

-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2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 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43조(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44조(기타 사항)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5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45조(회원) 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으로 한다.

제46조(목적) 학생자치회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제47조(권리와 의무) 학생자치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① 학생자치회 회원은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② 학생자치회 활동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다.
- ③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된 학교 정책 결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제48조(협의·지원사항)

- ① 학생 연구 활동
-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 활동
- ③ 각종 봉사활동
- ④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 ⑤ 각종 캠페인 지원 (학교폭력 예방,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등)
- ⑥ 그 외 학생생활 관련 활동

제49조(학급자치회 임원 구성과 선출)

- ① 학급자치회는 당해 연도 학급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② 학급자치회 임원은 2~6학년 학급자치회 회장 1명, 부회장 1명으로 한다.
- ③ 학급자치회에서 학생들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④ 회장, 부회장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학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제50조(학급자치회 임원의 임기)

- ①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학기 단위로 한다.
- ②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궐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과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궐 선거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1조(학생자치회 임원 구성과 선출)

- ① 임원 구성은 전교 학생자치회장 1명(6학년)과 부회장 2명(6학년 1명, 5학년 1명), 4~6학년 각 학급 학생자치회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한다.
- ② 학생자치회장은 6학년, 전교 학생자치 부회장은 5학년과 6학년에게 입후보 권한이 주어진다.
- ③ 당해 연도의 전교 학생자치회장, 부회장은 당해 연도 이전 해의 3~5학년 재학생이 참여하는 민주적 방법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 ④ 회장, 부회장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학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 ⑤ 학생자치회를 담당하는 교사는 전교학생자치회 임원선출 계획을 사전에 공고하여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선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선거관리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선출 계획과 과정을 관리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출이 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그 임무를 완수한다.

제52조(학생자치회 임원의 임무)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학교를 대표하며 학생자치회 의장으로서 학생자치회를 주관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해당 업무를 계획·운영한다.
- ④ 각부 부원은 부장을 도와 해당 부서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53조(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

- ①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학년 단위로 한다.
- ②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전학, 질병, 취학면제, 유예, 징계, 기타 등)에는 보궐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4조(학생자치회 회의)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두며, 운영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는 학생자치회 운영계획에 따라 월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학생자치회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3. 의결은 학생자치회 재적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짐
 4. 의결 전 전체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② 학생자치회의 협의 및 의결사항은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학생자치회의에서 결정하여 반영된 내용은 학급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학생은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6장 학생생활교육

제55조(학생생활교육) 시화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별도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제7장 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56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시화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7조(적용 범위) '시화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58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시화초등학교의 학교 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 절차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59조(위원회 구성)

- ① 시화초등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보호자·교원·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되며,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 이하로 한다.
-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되며,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보호자 대표는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 ⑥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학생·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 외부위원으로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60조(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학교장

제62조(검토 및 의견수렴)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회의(학급·학년회의, 학생자치회 회의, 학부모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가정통신문, 스티커 붙이기,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63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64조(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등 정보 공시한다.

제65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6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화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